



# 군 산 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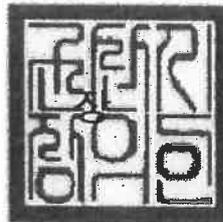
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(독서실·교습소·개인교습자) 휴원 권고

1. 귀 학원(독서실, 교습소, 개인교습자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.
2. 코로나19 발병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어 국내에서도 종교시설,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이 발생되거나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3. 4월 6일부터 학생 등교를 위한 코로나19 상황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3. 22. ~4. 5.(15일간)까지 운영을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,
4. 귀 학원(독서실, 교습소, 개인교습자)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 불임 예방준칙의 준수 사항을 따라야 하며, 이행 여부는 교육청과 우리 시에서 현장 점검할 예정입니다.
5. 위반시설은 집합금지명령 발동,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300만원\*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을 청구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법적근거 : 감염병예방법(제49조 제1항 제2호) 집회·집합 제한명령

- 불임
1.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1부.
  2. 코로나19 관련 학원 준수사항 1부. 끝.

# 군 산 시



수신자 독서실 30개소 귀하, 학원 543개소, 교습소 69개소

주무관 박순주      교육지원계장 진미영    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   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     전결 2020. 3. 23.

협조자

시행 교육지원과-2757      (2020. 3. 23.)      접수

우 54078     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     / www.gunsan.go.kr

전화번호 063-454-2585      팩스번호 063-454-2579      / sunju81@korea.kr      / 비공개(5)

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, 개인정보보호 꼭 지켜야 할 우리의 "약속"입니다

#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

## ① 적용 대상

- (보건복지부장관 명령) - ▲종교 시설 ▲살내 체육시설 ▲유흥 시설(클럽·클럽유흥주점)
- (전라북도지사 명령) - ▲PC방 ▲노래연습장 ▲학원 ▲콜센터 ▲영화관

## ② 적용 기간

- 2020년 3월 22일(일) ~ 4월5일(일) (연장 가능)

## ③ 법적 근거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
  - \*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'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'

### [감염병예방법]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## ④ 준수사항

### <PC방, 노래연습장, 학원>

-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(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)
- 출입구에서 발열,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,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, 고위험군 출입 금지(대장 작성)
-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(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)
-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
-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~2m 이상 유지
- 최소 2회/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(일시·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)
  - \* 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
-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(성명, 전화번호 필수) 작성·관리